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1.

발 의 자 : 오세희 · 박민규 · 조인철
허종식 · 신정훈 · 김현정
황운하 · 강득구 · 김정호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·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,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.

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·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,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·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

있음.

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·등록을 촉진하고(안 제27조제1항),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).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2억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, 자질향상,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”을 “지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·발전을 도모”로, “경영기술지도사회(이하 “지도사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”를 “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(이하 “지도사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도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영기술지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본다.

제3조(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

행 당시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영기술지도사회의 회원인 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회원인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영기술지도사회의 회원이 아닌 지도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자본금 등)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<u>2억원</u> 이상이어야 한 다. ② · ③ (생 략)	제27조(자본금 등) ① ----- ----- <u>1억원</u> ----- 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지도사회의 설립) ① <u>지도</u> <u>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, 자질</u> <u>향상,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</u> <u>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</u> <u>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</u> <u>사회(이하 “지도사회”라 한다)</u> <u>를 설립할 수 있다.</u>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<u>한다.</u>	제38조(지도사회의 설립) ① <u>지도</u> <u>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</u> <u>· 발전을 도모-----한</u> <u>국경영기술지도사회(이하 “지</u> <u>도사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② ----- <u>하며,</u> <u>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</u> <u>사람은 지도사회의 회원이 되</u> <u>어야 한다.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